

# 부속서 I

## 한국의 유보목록

### 주해

1.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7.10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의 기준의 조치를 규정한다.
  - 가. 제 7.4 조(내국민 대우)
  - 나. 제 7.5 조(최혜국 대우)
  - 다. 제 7.8 조(이행요건), 또는
  - 라. 제 7.9 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  - 가.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  - 나.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, 제7.10조(비합치 조치) 제1항가호에 따라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, 제1항에서 언급된 조(들)를 명시한다.
  - 다. 정부수준<sup>1</sup>은 유보된 조치(들)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.
  - 라. 조치<sup>2</sup>는 유보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.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
    - 1)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,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. 그리고
    - 2)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

---

<sup>1</sup>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,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.

<sup>2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7.10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.

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. 그리고

마. **유보내용**은,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,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.

3. 유보항목의 해석에서,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에 비추어 해석된다.

가. 조치 요소가 **유보내용**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 그리고

나.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한도에서,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,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.

4. 제7.10조(비합치 조치) 제1항가호에 따라, 그리고 제7.10조(비합치 조치) 제1항다호를 조건으로, 유보항목의 **관련의무**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.

5.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.

**1. 분야**

농축산업

**관련의무**

내국민 대우(제 7.4 조)

**조치**

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(법률 제 16479 호, 2019. 8. 20.)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(대통령령 제30170호,  
2019. 10. 29.)

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2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 
2018-137호, 2018. 7. 6.)

**유보내용**

외국인은 1)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  
할 수 없다. 또는 2)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  
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.

## 2. 분야

생물학적 제제 제조

### 관련의무

이행요건(제 7.8 조)

### 조치

약사법 제 42 조(법률 제 16250 호, 2019. 1. 15.)

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(총리령 제1544호,  
2019. 6. 12.)

### 유보내용

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  
을 조달해야 한다.

3. 분야	에너지 산업 –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, 송전, 배전 및 전력 판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 7.4 조)
조치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(법률 제16191호, 2018. 12. 31.)
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(대통령령 제30118호, 2019. 10. 8.)
	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(법률 제16479호, 2019. 8. 20.)
	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(대통령령 제30170호, 2019. 10. 29.)
	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37호, 2018. 7. 6.)
	공공적법인의지정(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-17호, 2000. 9. 28.)
	금융투자업규정 제6-2조(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-8호, 2019. 3. 20.)
유보내용	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.
	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

초과할 수 없다.

송전,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.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.

#### 4. 분야

에너지 산업 – 가스 산업

#### 관련의무

내국민 대우(제 7.4 조)

#### 조치
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19 조(법률 제 11845 호, 2013. 5. 28.)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(법률 제 16191 호, 2018. 12. 31.)

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(법률 제 16479 호, 2019. 8. 20.)

한국가스공사 정관 제 11 조(2019. 3. 27.)

#### 유보내용

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.